

특정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3년 안전사고 대비 공사현장 특정감사 –

2023. 5.



1. 행정상 일람표

(단위 : 천 원)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 치		재 정 상 조 치					
			시정	주의	회 수	금액	감 액	금액	추 징	금액
계			5건	4	1					
1	◎ ◎ ◎ ♣♣♣♣♣♣	♠♠♠ 도로점용 업무 부적정	1							
2	◎ ◎ ◎	@@@@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 추진 부적정	1							
3	☆ ☆ ☆ ☆ ☆	\$\$ ◇◇◇◇ 친수공간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1							
4	☆ ☆ ☆ ☆ ☆	●●●● 000사업 추진 부적정	1							
5	♣♣♣♣♣	●●●● ♠♠♠♠♠♠♠♠ 신축 공사 추진 부적정		1						

2. 처분요구일람표

- 1. ♠♠♠ 도로점용 업무 부적정(시정) 1
- 2. @@@@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5
- 3. \$\$ ◇◇◇◇ 친수공간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시정) 10
- 4. ●●●● 000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15
- 5. ●●●● ♠♠♠♠♠♠♠♠ 신축공사 추진 부적정(주의) 20

일련번호	1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처리부서)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도로점용 관련 업무 부적정
 소 관 청 ◆◆군
 관 계 부 서 ○○○, ♣♣♣♣♣♣♣♣
 내 용

1. ♣♣♣ 도로점용 허가 사전협의 절차 미이행

도로점용사무와 관련하여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에서 ㉠㉠㉠㉠ ㉠㉠㉠㉠㉠㉠㉠와 ◆◆군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위임사항

소관부서	건 명	수임기관	비 고 (관련법령)
㉠㉠㉠㉠ ㉠㉠㉠㉠㉠	도로점용 등	◆◆군	「도로법」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 제66조,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 및 제74조
	지방도 점용허가에 따른 협의	㉠㉠㉠㉠ ㉠㉠㉠㉠㉠㉠	「도로법」 제61조

「도로법」 제61조 및 제107조에 따르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군 ○○○에서는 ㅁㅁㅁㅁ의 위임사무인 지방도에 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도로관리청인 ㅁㅁㅁㅁ ㉠㉠㉠㉠㉠㉠와 협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군 ○○○에서는 2021년 2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표 2]와 같이 31건의 도로점용 허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방도 관리청인 ㅁㅁㅁㅁ ㉠㉠㉠㉠㉠와 사전협의를 전혀 하지 않아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표 2] 도로점용 미협의 현황

일련 번호	피허가자	허가내용					비고
		주소	면적(m ²)	사용목적	허가기간	허가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 도로의 무단점용

◆◆군 ○○○ 및 ♣♣♣♣♣♣에서는 “◇◇◇◇◇ 신축부지 진입도로 개설 및 기반조성사업(2차)” 외 1건 공사에 대해 아래 [표 2]와 같이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준공되었으며 ㅍㅍㅍㅍ에서 관리중인 지방도에 일부 토지가 편입되어 있다.

[표 2] 공사 및 지방도로 편입현황

공사명	위치		사업량	사업기간	지방도 편입현황			비고 (공정율)
	읍면	리동			지번	면적 (㎡)	점유물	
◇◇◇◇◇ 신축부지 진입도로 개설 및 기반조성사업 (2차)	◇◇	●●	◇◇◇ 부지조성 A=5,074㎡	2023.01.27. ~ 2023.08.01.	000-0	473	토사	○○○ (5%)
					000-0	373		
					000-0	25		
					000-0	1517		
●●●●● 시설공사 (2단계)	◇◇ ◆	▼▼ ▽▽ ▲▲	상수관로 D50~D350 L=320m 등	2018.11.19. ~ 2022.06.06.	◇◇읍 ◆◆리 000-0	118	상수관로	♣♣♣ ♣♣♣ (100%)
					◇◇읍 ◇◇리 000-0	100	물탱크	
					◇◇읍 ◇◇리 000-0	80	물탱크, 가압장 건축물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군 ○○○ 및 ♣♣♣♣♣♣에서는 상기 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진 1]과 같이 행정절차인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거나 ㅍㅍㅍㅍ와 사전 협의 없이 지방도를 무단 점용한 사실이 있다.

[사진 1] 도로 무단점유물 현장사진

◇◇◇◇◇ 신축부지 진입도로 개설 및 기반조성사업(2차) ●●리 도로 무단점유물(토사)	●●●●● 시설공사(2단계) ◇◇리 도로 무단점유물(물탱크 및 가압장 건물)

조치할 사항 ◆◆군수는

- ① 앞으로 도로점용 허가 시 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이와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도로의 무단 점용 사항에 대하여는 「도로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2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처리부서)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부적정
 소 관 청 ◆◆군
 관 계 부 서 ○○○○
 내 용

◆◆군 ○○○에서 “@@@@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를 아래 [표 1]과 같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1] 공사(용역)현황

(단위 : 백만 원)

공사명 (용역명)	위치		사업량	도금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			옹벽 L=35m 배수관 L=106m 등	525	2022. 8. 25.	2022. 9. 1. ~ 2023. 5. 12.	□□□□(주) ○○○	공사중 (65%)
@@@@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 실시설계용역	▽	▼▼	실시설계용역 1식	20	2022. 2. 24.	2022. 2. 28. ~ 2022. 8. 3.	(주)○○○ ○○○○○○○ ○○○	완료

1. 품질시험계획 미수립 등 품질관리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이상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 원 이상 전문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험시설 및 인력

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이하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는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 장비를 구비하고, 20㎡이상의 시험실 설치 및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품질관리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8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종류별, 공종별 시험 종목·방법 및 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군 ○○○에서는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인 본 공사를 추진하면서 품질시험계획 미수립, 품질시험실 미설치, 품질시험장비 미구입 등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안전관리 업무수행 부적정

가. 설계의 안전성 검토 절차 미이행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실시설계를 할 때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¹⁾하고 자료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하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조에 따라 발주청은 설계 발주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발굴한 해당

1)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서 사전에 발굴하여 사업추진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제거·저감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것

건설공사의 위험요소 및 저감 대책을 바탕으로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자로 하여금 설계안전 검토보고서와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도록 설계성과 납품 품목에 명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군 ○○○에서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면서 과업지시서에 설계안전 검토보고서 등 문서를 제출하도록 설계성과를 납품 품목에 명시하지 않아 설계안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²⁾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의 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또한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발주청은 건설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건설사업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을 사용하는 본 공사를 추진하면서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발주청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발주청인 ◆◆군 ○○○에서는 건설사업자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시정·지시하지 않아 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사 진] 옹벽설치 현장 사진

옹벽설치(높이 8m)(하부에서 촬영)	옹벽설치(높이 5m)(상부에서 촬영)

2)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및 브라켓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흠막이 지보공 등

3. 적정 공사기간 산정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의2 및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4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발주청에 설계 성과품의 일부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발주청은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공사기간과 그 산출근거를 입찰서류인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에 명시된 공사기간 및 산출근거를 검토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 ○○○에서는 설계자가 설계서를 제출했을 때 공사기간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설계사인 (주)○○○○○○○○으로부터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제출하게 하지 않았으며, 근거 없이 제시한 공사기간(6개월)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공사기간과 산출근거를 현장설명(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 입찰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적정 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었다.

4. 축중기 설치 의무 위반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³⁾」 제3조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의 과적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⁴⁾를 이용하는 사토·순성토 또는 건설폐기물 중 어느 하나의 운반량이 10,000m³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공사는 잔량이 10,000m³ 이상인 경우)현장에는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훈령 제1058호, 2018.8.1.시행

4)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그런데 ◆◆군 ○○○에서는 본 공사현장 내 순성토 운반 계획량이 11,500 m³인데도 설계내역에 축중기 설치를 위한 비용을 계상하지 않았고 시공사가 현장에 축중기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안전 및 품질관리 소홀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3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처리부서)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군
관 계 부 서 ☆☆☆☆☆
내 용

◇◇군 ☆☆☆☆☆에서는 “\$\$ ◇◇◇◇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아래 [표]와 같이 2021.12.28. ○○○○(주) ○○○과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공사명	위 치		사업량	공사비			사업기간	도급자	건설기술 관리자	비고
	읍면	리동		계	도급	관급				
\$\$ ◇◇◇◇ 친수공간 조성사업	▽	▼▼	*** 조성 A=1,198.0㎡ 경관 보도교 L=36.0m	6,128	4,301	1,827	2021.12.29. ~ 2023.11.16.	○○○○(주) ○○○	(주)○○○ ○○○외 1	

1. 건설공사 안전관리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향타 및 향발기,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5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해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군 ☆☆☆☆☆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를 이행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 ◇◇◇◇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천공기, 항타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임에도 안전관리계획 미 검토 및 그 결과 미 통보 등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건설공사 품질관리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에 대하여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87호, 2020.12.16.)」 제90조 및 제139조에 따르면 공사 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 후 발주청에 승인⁵⁾을 요청하여야 하며, 품질시험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발주청은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함.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로서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와 20㎡이상의 시험실 규모를 갖추고, 품질관리 초급기술인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 ☆☆☆☆☆에서는 위 공사를 추진하면서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임에도 불구하고 품질시험계획을 미승인하고, 시험실 및 시험·검사 장비를 구비 하지 않는 등 품질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 공사비 과다 계상 및 공사 감독 업무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 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계상 된 공정은 설계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987호, 2020.12.16.)」 제97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인은 시공자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 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사업관리인은 공사 추진 시 공사가 설계도서 및 공정계획표대로 추진이 되었는지 공사 시행 단계별로 정밀히 확인·검측하여 공사 시설물이 차질없이 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문제점이 발생 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2 제6항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설계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군 ☆☆☆☆☆에서는 “\$\$ ◇◇◇◇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감사일에(2023.4.25.)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재 현장 내 토사 이동이 없다는 사유로 세륜 세차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자동식 세륜시설이 설계에 반영되었는데도 불필요하게 수조식 세륜시설을 반영하여 사업비 00,000천 원(재경비 포함)을 설계 변경 하여 감액하지 않았다.

또한 위 부서에서는 당초 설계 시 가설사무실 및 가설창고 등 360㎡를 반영하였으나, 실제로는 인근 가옥 임대 및 컨테이너(3m×6m, 1동)를 설치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사업비 00,000천 원(제경비 포함)을 설계 변경하여 감액하지 않았다.

그 결과 설계와 다른 시공 등으로 사업비 00,000천 원(제경비 포함)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00,000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안전 및 품질관리 소홀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4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처리부서)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군
 관 계 부 서 ☆☆☆☆☆
 내 용

◆◆군 ☆☆☆☆☆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 뉴딜○○○사업 (2차분)” 외 1건을 계약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주)○○○○○○ 외 1개사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표 1]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위치	사업량	계약금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대표자)	비고 (공정률)
◆◆◆ ○○○뉴딜○○○사업 (2차분 : 본 공사)	◆◆ ▽ ♠♠	방파제 보강 L=24m 및 해안변 캠핑존 조성 등	3,009	2021. 6. 25.	2021. 6. 28. ~ 2023. 5. 6.	○○○○○(주) ○○○	86%
◆◆◆ ○○○뉴딜○○○사업 (2차분 : 본 공사)	◆◆ ▽ ♠♠	연결보도교 설치 L=141.8m 등	3,220	2021. 8. 4.	2021. 8. 10. ~ 2023. 6. 28.	☒☒☒☒☒☒ (주)○○○	64%
○○○ 외 1건 ○○○뉴딜○○○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 ♥♥	건설사업관리 1식	1,128	2021. 10. 22.	2021. 10. 26. ~ 2023. 9. 25.	(주)○○○○○○ 외 1개사	

1. 건설공사 품질관리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및 92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⁶⁾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⁷⁾(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를

6)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하고, 건설사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자재·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검사 장비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90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 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 ☆☆☆☆☆에서는 건설사업자가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품질관리에 대한 업무소홀이 확인된 경우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 뉴딜○○○사업(2차분)” 외 1건을 추진하면서 건설사업자가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시험·검사장비를 미구비하고 굳지 아닌 콘크리트에 대한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 함유량 등의 시험을 공사 이해관계자인 레미콘 납품업체를 통해 실시하였음에도 발주청에 보고하지 않은 채 시정하지 않는 등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7) 품질검사 실시 예외사항 : 1.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2.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3.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등

2. 관급자재(알루미늄제교량난간) 구입 부적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 고시)」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⁸⁾이 체결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⁹⁾이 1억 원 이상인 물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매할 때에는 5개 이상의 업체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이하 “2단계 경쟁”이라 한다)하도록 되어 있고, 2단계 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일한 물품을 기준금액인 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 ☆☆☆☆☆에서는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1억 원 이상인 물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매할 때에는 2단계 경쟁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하고, 2단계 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구매금액을 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특정업체와 제3자단가계약¹⁰⁾을 체결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 뉴딜○○○사업(2차분)”을 추진하면서 알루미늄제교량난간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000,000천 원으로 2단계 경쟁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 2]와 같이 교량난간을 제3자단가계약으로 구매하였다.

[표 2] 관급자재 분할구매 내역

(단위 : m, 원)

구매물품	납품요구일자	납품(예정)일자	구매수량	설계 금액		구매 금액		세부품명번호
				단가	금액	단가	금액	

8) 조달청에서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한 계약

9) 한번에 다수의 세부품명·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구매할 경우 각 물품별 금액을 모두 포함

10)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고 신속한 공급이 필요한 물자의 제조, 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에 관하여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공고하고 각 수요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납품을 요구하여 구매하는 계약

그 결과 다수공급자계약업체로 지정된 다수 업체들에게 입찰 참여 기회를 제한하였고, 2단계 경쟁을 통한 예산 절감¹¹⁾ 등의 효과를 저해한 사실이 있다.

3. 공사원가 과다 계상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계상 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군 ☆☆☆☆☆에서는 “○○○ ●●뉴딜○○○사업(2차분)”을 추진하면서 절곡이 불필요한 장철근을 가공 물량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내역서에 철근이 현장가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공장에서 가공된 철근을 납품받아 시공하였음에도 설계변경을 통해 00,000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액하지 않았으며, 옹벽 비계 물량 산정 시 상단 0.5m를 공제하여야 함에도 공제하지 않고 직고 2.0m 미만인 경우 비계가 불필요함에도 반영하여 0,000천 원을 과다 계상하였으며, 해안면 캠핑존 바닥 635㎡ 포장 시 경화토포장과 도막형바닥재를 중복으로 설계에

11) 나라장터에 등록된 계약가격의 100분의 90까지 제안할 수 있어 2단계경쟁의 방법으로 구매하면 나라장터 등록가격보다 최대 10%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음

반영하여 00,000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다.

또한 “◆◆◆ ●●뉴딜○○○사업(2차분)”을 추진하면서 절곡이 불필요한 장철근을 가공 물량으로 설계에 반영하여 0,000천 원을 과다 계상하였다.

그 결과 설계와 다른 시공 및 과다 설계 등으로 공사비 00,000천 원(제경비 포함)이 과다하게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00,000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품질관리 소홀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시기 바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5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처리부서)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 신축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군
 관 계 부 서 ㉮㉮㉮㉮㉮
 내 용

◆◆군 ㉮㉮㉮㉮㉮에서는 “○○○○ ♠♠♠♠♠♠♠♠ 신축 공사”를 아래 [표 1]과 같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1] 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사업내용	발주부서 (사업기간)	설계 금액	공사 금액	도급자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착공 신고
						기획 업무	기획 심의	건축 협의	
○○○○ ♠♠♠♠♠♠♠♠ 시설 신축공사	복지시설 신축 382.57㎡	㉮㉮㉮㉮㉮ (20.12~23.12)	73	1,500	(주)□□□□ ○○○	부	부	부	부

1. 건축기획 및 협의(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 부적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공건축사업은 [표2]와 같이 설계비 추정 가격 기준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하여 공공건축심의 위원회의 건축기획 심의 등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은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건축분

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¹²⁾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발주방식, 디자인관리방안 및 공사수행방식 등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2] 공공건축건립사업 사전 행정절차

설계비 추정가격	건축기획 업무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	설계공모
5천만원 이하	필수	x	선택	선택
5천만원~1억원 미만	필수	x	필수	선택
1억원 이상	필수	필수	필수	의무(우선적용)

또한 「건축법」 제11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해당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¹³⁾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에 건축 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기술지도 계약서 사본, 감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공사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을 진행하면서 건축기획 업무는

12) 건축사, 「건축기본법」 제21조에 따른 민간전문가,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 이거나 재직할 사람,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의뢰하여야 하고, 설계추정 가격이 5천만 원이 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건축기획 심의를 받아야 하며, 공사시행 전에 건축허가 서류를 구비하여 허가권자와 협의를 한 후 계약을 의뢰하고, 착공신고서에 건축 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기술지도 계약서 사본, 감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공사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군 ㄱㄱㄱㄱㄱ에서는 2020. 12월부터 2023. 4월까지 “○○○○♠♠♠♠♠♠♠♠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관련법령 검토를 소홀히 하여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발주방식 등에 관한 건축기획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설계추정 가격이 5천만 원이 넘어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대하여 공공건축심의의를 하여야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으며, 공사시행 하기 전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와 건축협의 하여야 했으나 하지 않는 등 필수적인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과에 계약을 의뢰하였고,

특히 도시계획도로 관련부서의 구두로 선형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은 채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건축이 불가능한 도시계획도로 위에 건축물을 배치한 후, 2022. 5. 24., 6. 9. 두 차례에 걸쳐 건축부서에 협의를 의뢰하였으나 대지의 적정성 문제 등으로 협의(허가) 신청이 취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그림] 부적정한 공공건축물 배치현황

현황도면	현장사진

건축협약(허가) 없이 2022. 5. 13. 공사를 체결하고 착공신고도 않고 2022. 6. 2. 공사를 일시 정지 한 채 ㄱㄱㄱㄱㄱ 및 €€ 등 총 13억 원을 반납하려고 하자 2023. 2. 24.에서야 군계획시설 변경 용역을 시행하여 사업 추진을 지연시킨 사실이 있다.

또한 계약부서에서는 사업부서로부터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계약을 의뢰 받아 계약 업무를 추진하면서 건축기획, 기획심의 및 건축협약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가 정지 및 지연 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법령 취지와 달리 2022. 11. 14. 준공되어야 할 군민의 필수적인 여가복지시설을 관련법 검토 소홀로 인해 지연시켜 공공건축물의 합리적인 조성과 관리로 투입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공사기간 산정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 산정 시 고려사항 및 결정절차에 관한 사항 등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공사기간의 산정 및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방심의위원회의 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3조,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에 관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그 산정근거를 명시 후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발주청에 설계 성과품의 일부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 공사를 입찰할 때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 **㉮㉮㉮㉮㉮**에서 공공건축사업을 수행하면서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그 산정근거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 공사를 입찰할 때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해야 한다.

그런데도 **◆◆군** **㉮㉮㉮㉮㉮**에서는 “**●●●● ♠♠♠♠♠♠♠♠** 신축 공사”를 추진하면서 실시설계자인 **㉮㉮㉮㉮㉮㉮㉮**이 설계 성과품을 납품하면서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명시하지 않았는데도 2023. 4. 28. 감사일 현재까지 보완 등 아무런 조치 없이 성과품을 승인하였고, 공사를 입찰 시에도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 결과 기후변화요인 및 주5일 근무제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공사기간 산정을 예방하고 공사의 품질 향상 및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법령 기준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 ① 앞으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 시 관계 법령 규정 확인을 철저히 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연찬과 함께 엄중 주의를 촉구 하시기 바랍니다.(주의)